

보도시점 2026.4.14.(화) 19:00 배포 2026. 4. 14.(화)

정부, 석유화학 원료·제품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대응

-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
-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
- 필요시, 긴급조정을 통해 생명·보건, 생필품, 핵심산업 분야 최우선 공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구윤철, 이하 재경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3.27, 고시)를 포함하여,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점매석 금지를 통한 석유화학 공급망의 원활한 유통 중점 추진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개 기초유분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우선 고시에서 정한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 매점매석 단속 대상

② 기초유분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③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 : 수급 불안 시 신속 지정

② 긴급 수급조정을 통한 보건의료, 민생, 핵심산업 최우선 공급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③ 시행시기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덕중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3-4911)
			사무관	전찬우 (044-203-4913)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서기관	하원석 (044-203-4933)
			사무관	박총희 (044-203-4932)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0)
		담당자	서기관	이수창 (044-203-4212)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44-215-2939)
	관세청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강승현 (042-481-7851)

참고 1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품목

① 에틸렌, 프로필렌 등 나프타에서 파생된 7개 기초 유분* (참고 2, 별표)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② 7개 기초유분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 (예. PE, PP 등)

③ 기초유분,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 (예. 수액bag, 포장용기 등)

⇒ 석화 원료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 ②, ③의 물품은 수급 차질 우려 시 관계부처 장관이 품목을 공고하여 신속 대응

□ 적용대상 사업자

○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운송·보관자 등

□ 매점매석 금지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 초과하여 보관 금지

- 추가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은 별도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 설정 가능

□ 긴급수급조정 조치

○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정해 생산·출고·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 명령 가능

-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성 등 우선 고려

□ 손실 지원

○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 발생 시, 그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 재정적 지원 가능

□ 시행일 : 2026년 4월 15일 ~ 6월 30일

※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

참고 2

7개 기초 유분 (고시 제2조 관련 별표)

명칭	MTI 코드 (6자리)	HS 품목명	HS 코드 (10자리)
1. 에틸렌 Ethylene	211090	에틸렌	2711141000
	211010	에틸렌	2901210000
2. 프로필렌 Propylene	21102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211090	프로필렌	2711142000
3. 부타디엔 등 Butadiene 4탄소(C4) 기초유분	211030	1,3-부타디엔	2901241000
	21109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2901230000
		이소프렌	2901242000
		부타디엔	2711144000
		부틸렌	2711143000
		부탄	2901101000
4. 벤젠 등 Benzene 6탄소(C6) 기초유분	211040	벤젠	2902200000
		벤조올(벤젠)	2707100000
	211090	헥센	2901291000
		헥산	2901102000
5. 톨루엔 등 Toluene 7탄소(C7) 기초유분	211050	톨루엔	2902300000
		톨루올(톨루엔)	2707200000
	211090	헵탄	2901103000
6. 자일렌 등 Xylenes 8탄소(C8) 기초유분	211060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440000
		크실롤(크실렌)	27073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2707500000
	211090	옥텐	2901292000
7.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211090	기타	2901299000
		기타	2901109000